

제 1 회건축사합동방안연구위원회

일시 : 1978. 8. 29 14:30

장소 : 협회 회의실

참석 : 위원장 강봉진

부위원장 장종률

위 원 김원안, 강진삼, 안인모, 송관식, 김동규, 장기인, 최창규, 이규복, 이명환, 한창진, 이봉로,
조영석, 구윤희, 박원순, 송학조, 김충득.

안건 : 건축사합동방안연구에 관한 건
회의내용

- 건축사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있는가 하는 방안으로 합동사무소운영에 대한점을 논의하였든바 대체적으로 건축 사업부는 창작활동이니 합동으로할수없다 하는분이 7명 찬성이 10명 찬반을 이시점에서 말할수 없다 하는분이 1명 (총참석18명중)
- 합동방안에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차기총회에제시하기 위하여 소위원을구성키로함.
소위원회위원선출 : 송관식, 조영석, 이규복, 이명환, 김원안, 김동규.
- 소위원회에서 합동방안을 작성하여 전체 연구위원회에서 심의시는 각시도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 확정하여 총회에 의안으로 제안키로함.

일부 위원들은 지난날 대단위 합동 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전체 건축사가 합동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해체된 경험에 따라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렇게 합동 사무소를 운영할때 덤핑이 방지되고 건축사의 품위가 향상되며 작품활동을 할수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수있어 전국적인 합동 사무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찬성발언과,

실제 작품은 창작활동이고 전회원이 개성이 각각 다르며 또한 능력이 다른데 이를 한데 묶어 합동 사무소를 구성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고 특히 공동분배라는것은 말이 안되며 기회 구성되었던 합동 사무소가 해체된 원인이 바로 이런데 있다고 주장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그러나 사법에서 2인 이상 합동을 권장하고 있어 법적인 뒷받침이 될수 있으며 합동 사무소 구성이 저해요소가 되는 공동분배, 개인의 능력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불만이 해소될수 있다면 합동 사무소 구성은 바람직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반대했던 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를 한 위원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의 합동사무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10월중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안키로 하였다.

